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사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154,820원, 지방교육세 932,460원, 농어촌특별세 466,220원[1] 합계 11,553,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장 및 2022. 10. 19.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농어촌특별세 466,2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 466,22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1. B으로부터 ○○ ○○○구 C[2] 대 3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건물(지하실, 1, 2층 각 11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7.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29,440,000원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9. 9.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장조사를 한 후 2021. 10.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07㎡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 부분 112.5㎡(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 10,154,820원, 지방교육세 932,460원, 농어촌특별세 466,220원 합계 11,553,5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6. ○○○○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장은 2021. 11.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24. 재차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2) 도로명 주소: ○○○○시 ○○○구 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심판원은 2022. 7.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와 관련자에 대한 질문·조사 등은 사실상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 등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관련자의 동의 없이 답변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적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신도들의 휴게 공간 및 공부방, 그리고 간헐적으로 종교 행사와 모임 당시 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줄곧 종교시설로 직접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노후로 균열·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수리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방치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단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본 법리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재조사 금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9호증, 을 제4,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현장조사 등이 사전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한 피고의 과세자료 수집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 취득세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1층에 거주하는 여자스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본점 소재지가 등기되어 있던 E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을 뿐, 그밖에 피고가 원고의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다.

② 나아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위 여자스님에 대한 질문은 해당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현장 확인 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등 또한 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③ 그리고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인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다.

④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위 여자스님의 동의 없이 E에 관한 답변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제4호증)과 녹음파일(을 제5호증)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 그리고 피고 스스로 확보한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명의의 법인세·주민세 등 각종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주된 과세자료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여자스님의 답변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고도 유력한 과세자료로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6, 7,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9. 9. 13.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천장 부분의 벽지가 상당부분 뜯어진 채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 내부에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시설이나 물품은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3. 20. 수리·복구 당시의 사찰 내·외부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은 2011년 내지 2012년에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도들의 휴게 공간 및 공부방, 그리고 간헐적으로라도 종교 행사와 모임 당시 식당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③ 오히려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종교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농·축·수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위 회사가 2013. 10.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었고, E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도 확인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E 연도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

사업연도(년)	과세표준(원)	납부세액(원)	납부일자
2017	1,134,994,767	1,778,959	2018. 4. 2.
2018	1,049,669,242	-1,030,541	2019. 4. 17.(환급)
2019	1,558,872,723	14,354,946	2020. 3. 30./5. 22.
2020	1,563,588,825	8,940,370	2021. 3. 30.
합계	5,307,125,557	24,043,734	

[E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사업연도(년)	○○		○○지점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2017	-	18,316,197	1,135,106,763	1,047,186,198
2018	-	21,846,850	1,181,720,996	1,022,702,599
2019	-	16,615,938	1,558,872,723	1,295,106,692
2020	-	12,939,920	1,563,588,825	1,301,327,895
합계		69,718,905	5,439,289,307	4,666,323,384

그리고 E에 대한 주민세(법인균등) 등의 납세고지 역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E의 소재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단지 명목상으로만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줄곧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노후로 균열·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하였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공실로 방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2017년경 다시 취득한 이후 신도들의 휴게 공간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는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금 사정 등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나아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비과세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칙으로 돌아와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의 사업목적 외 시설의 소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7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